



---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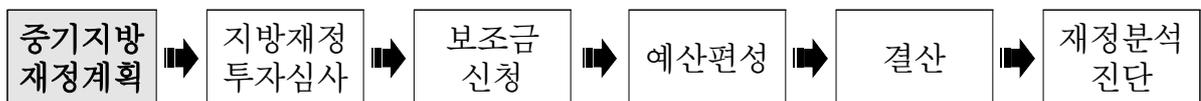
# 목 차

I.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	
1. 제도 의의 .....	
2. 수립 체계 .....	
3. 근거규정 및 연혁 .....	
II.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	
1. 최근 경제상황 .....	
2.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	
3.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 .....	
[참고1] 2021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방향 .....	
[참고2] 한국판 뉴딜 추진 전략 .....	
III.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1. 기본방향 .....	
2. 대상 및 작성기준 .....	
IV. 영암군 기본현황 .....	
1. 군정목표 .....	
2. 일반현황 .....	
3. 재정현황 .....	
4. 중기재정운용 목표 .....	
V. 영암군 중기지방재정계획 .....	

## 1. 제도 의의

### □ 개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 예산편성과의 관계

###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추가경정예산 >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 2. 수립 체계

###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별 계획을 기초로 하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부합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

### □ 수립 절차

- |   |               |  |
|---|---------------|--|
| ① | <b>행정안전부</b>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20.7월)                     |
| ② | <b>지방자치단체</b> | ▪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20.7.~11월)                       |
| ③ | <b>지방자치단체</b>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7.~11월)<br>▪ 지방의회(11월) 및 행정안전부(12월) 제출 |
| ④ | <b>행정안전부</b>  | ▪ 자치단체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관계부처 협의)('21.1.~3월)               |
| ⑤ | <b>행정안전부</b>  | ▪ 국무회의 보고('21.4월)  |

### 3. 근거규정 및 연혁

####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4년)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
- ('15년) 계획 수립기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1. 최근 경제상황<sup>1)</sup>

□ (세계경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전망

※ '20년 세계 상품 교역량은  $\Delta 13 \sim \Delta 32\%$  감소 전망(WTO)

※ '20년 3월 항공여객운송실적은 전년동기비  $\Delta 53\%$  감소하여 '06년 수준으로 회귀(IATA)

○ 주요국의 1/4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세계경제 '20년 성장률이 금융위기('09년  $\Delta 0.1\%$ ) 이상 하락( $\Delta 3.0\%$ , IMF)할 전망

※ '20.1/4분기 성장률(전기비, %): (美) $\Delta 1.2$  (英) $\Delta 2.0$  (獨) $\Delta 2.2$  (中) $\Delta 9.8$  (韓) $\Delta 1.4$   
 '20/'21년 성장률 전망(IMF, %):  $\Delta 5.9/4.7$   $\Delta 6.5/4.0$   $\Delta 7.0/5.2$   $1.2/9.2$   $\Delta 1.2/3.4$

□ (국내경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 중

○ 1/4분기 성장률이 내수침체로 글로벌 금융위기('08년 4/4분기  $\Delta 3.3\%$ ) 이후 가장 부진한  $\Delta 1.4\%$  기록

※ 1/4분기 성장기여도(계절조정 전기비, %):

(민간소비) $\Delta 3.1$  (정부소비)0.2 (투자) 0.9 / (서비스업 생산) $\Delta 1.1\%$

○ 작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고용도 3월부터 큰 감소세로 전환되고, 수출도 4월부터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실물경제 피해 본격화

※ 취업자증가(전년비, 만명): ('18)9.7 ('19)30.4 ('20.1) 56.8 (2) 49.2 (3) $\Delta 19.5$  (4) $\Delta 47.6$

※ 수출증감률(전년비, %): ('20.1) $\Delta 6.6$  (2)3.6 (3) $\Delta 1.4$  (4) $\Delta 25.1$  (5.1~20.) $\Delta 20.3$

○ '20년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 외환위기('98년  $\Delta 5.1\%$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존재

※ '20년 한국성장률 전망(%): (무디스) $\Delta 0.5$  (피치) $\Delta 1.2$  (S&P) $\Delta 1.5$  (KDI)0.2 (한경연)0.3

1) 2020년 국가재정운용방향(기획재정부, 5.28.)

## 2.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sup>2)</sup>

### 1. 수입 측면

#### ① [총괄]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 (총규모) '20년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악화, '21년까지도 여파 지속될 경우 수입 제약 불가피
  - 수입 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 ※ 메르스 사태, 최초 발병일 '15. 5. 20., 종식일 12. 23.(약 7개월 지속)
- (자체재원) 지방소비세·재산세 증가 요인\*이 있으나, 취득세·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규제·경기 위축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 대출 요건 강화 등 부동산 대책 영향에 따라 취득세 감소도 가능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규모 연동,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 둔화 예측
  - '21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호조가 전망되었으나,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상황 변동 감안 필요

< '20년 지방재정 수입 여건(2020년 지방재정전략회의) >

-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국세 등 국가 총수입 감소
  - ※ '20년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09.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조원 감소
  - '20년 내 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 총액 또한 3.7%(1.95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 세입경정으로 본예산 대비 지방소비세 감소(△1.1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감소(△1.3조원) 등으로 '20.4월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동월 대비 1.4조원 감소하는 등 자체 세입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

2)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

## ②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비중 확대

- (총괄)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입 여건 확충, 국세 대 지방세 비중 7:3 실현에 점진적 접근
  - (1단계 재정분권 성과) 지방소비세율 '18년 11% → '20년 21%로 인상 (10%p ↑), 지방세 비중은 '18년 22.3% → '20년 24.5%로 확대(2.2%p ↑)
    - ※ '18년 대비 연간 약 8.5조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추가이전('18년 징수실적 기준 추계)
  - (수도권-비수도권 안분) 10%p 인상분을 소비지수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조정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현재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 방안 합의 시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 기대

## ③ [적립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략적 활용 가능

- (여유재원 활용성 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방기금법」 제16조) 설치·운용을 통해, 특별회계·기금 여유재원 효과적 활용
  - ※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신설('20.6.9.시행)
- 회계·기금 재원의 예수·예탁 또는 既 적립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가능

## 2. 지출 측면

### ① [총괄] 분야별·지역별 지출 수요 변화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및 수도권 과밀화 등 구조 변화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지출 여건 상이
  - (분야별)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 (지역별)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전체적인 행정수요 증가, 군 단위는 복지 분야(고령화 요인) 외 타 분야 수요 감소 가능성

### ② [지역경제]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지역 경제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라는 부정적 요인 추가 발생
  - IMF·OECD 등 국제기구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권고하면서,
    - 완화적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필요성 주문
  - 고용 감소,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의 과감한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
    - ※ (예)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에 직면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활비 지급 추진

### ③ [복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 증가

- 국가는 4대 핵심분야(고용·소득·건강·사회서비스)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도 대응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
- 노인 생계 지원·출산 장려·청년 정착 유도 등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체 복지사업 필요성도 증가

### 3.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sup>3)</sup>

#### 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집행 노력 강화

- (계획적 예산편성)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 방지 등 개선 노력 필요
- 집행률은 80% 중반 수준으로 '19년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결산상 잉여금은 40~50조원 규모로 이·불용액 축소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 필요
  - ※ (최근 집행률 현황, %) '15년 86.1, '16년 85.8, '17년 85.0, '18년 84.2, '19년 86.9
  - (최근 결산상잉여금 현황, 조원) '15년 42.7, '16년 49.3, '17년 55.1, '18년 59.4
- 집행 부진은 1차적으로 예산 편성의 계획성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노력
  - 특히, 연중 수입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 단계부터 충분한 규모로 편성, 집행 가능기간을 최대한 확보

< 참고 : 지방재정제도 운영일정 개선사항 >

구분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지방	· 결산분석(3월)		· 예산편성(6~10월)	· 의회제출·의결(11·12월)
현행		· 재정분석 지표(6월)	· 예산편성기준(7월) · 중기재정계획(8월)	· 교부세(12월) · 재정분석(12월)
제도 개선	· 재정분석지표(3월)	· 지방재정전략회의(6월) · 예산편성기준(6월말) · 중기재정계획(6월말)	· 교부세(9월말) · 재정분석(9월)	

\* 예산편성운영기준(7월→6월), 지방교부세 통지 시기 단축(12월→9월말) 등 일정 개선으로 당초 예산 편성의 계획성 제고

3)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

- (추경예산을 통한 구조조정) 추경예산편성 시 집행 부진사업 예산 삭감 후 타 사업에 재편성 등 연내 구조조정 실시
  -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집행 효율성 제고
- (사전절차 이행) 국가 기본계획 반영·타당성 조사·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에 미리 대비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 방지
  - 특히, 토지매입·보상 단계에서 주민 협의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보상 협의 진척 이후 본격적인 예산 편성 필요
    - ※ 토지보상 미완료 단계에서 설계비, 건축비 편성 → 토지보상 협의 장기화 될 경우 차년도로 이월될 가능성 높음

## 2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선제적 대응

- (한국판 뉴딜 추진)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확산하는 디지털 뉴딜
  -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통한 그린 뉴딜
  - 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조성
- (소비 활성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확산·홍보 강화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노력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은 당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판매액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소비 증가 효과 기대
  - 관광 인프라 개선, 신규 관광시설 조성으로 관광객 방문 유도, 전통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이용객 증가 도모

---

### ③ 신규사업 사전·적극 발굴 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 (신규사업 발굴)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지속적 증가, 수입 증대에 맞추어 주민수요가 높은 사업 발굴 등 사전 준비
  - 신규사업 준비가 부족할 경우 잉여금 확대 또는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비효율 발생
  - 연구용역, 타 자치단체·해외 사례 연구, 주민 의견수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국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발굴로 시너지 효과 창출
    - \* ①경제활성화(한국판 뉴딜 등), ②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③민생·고용안정, ④코로나19 방역 등
- (중장기 사업계획) 인구·산업 구조, 인프라 현황 등 향후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수립
  - 현 시점에서 유효한 투자가 향후 여건 변화에 의해 낭비적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 필요
    - ※ (예시) 미래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도로 확충 → 이용 주민 감소로 편익 부족
    - 현 시점 주력산업에 편중된 예산 편성 → 신규 산업 육성 실패로 지역 경기 침체

---

### ④ 현금성 복지사업 효과성 검토·정비 등 복지 지출구조 개혁

---

- (체계 정비)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저성과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대비
  -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재난 상황은 예외
- 특히, 현금 직접 지원사업의 경우 인접 자치단체와의 지출 경쟁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등 지속 가능성 우려
-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되,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 사업은 과감한 정비 실시
  - \* 복지수당(출산장려금 등) 수령 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 본래 목적 외 사용(예 : 청년 구직수당을 구직활동 목적 외 소비에 사용)

## 1.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 (재정여건) 금년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세입)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불확실성도 확대될 우려
- (세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투자소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소요도 추가될 전망
- (재정건전성) 최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응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필요
- (기본방향)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함께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병행
- (재정기조)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 성장의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
-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
- (투자중점)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
- 생계·교육·고용·주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사회안전망 보강,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 확충 등으로 포용가치 확산 뒷받침
  -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제규모에 걸맞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안전 환경 국방 분야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 (재정혁신) 세출 전반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다부처 협업 예산 도입 등을 통한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 의무감축, 관행적 보조금·출연금 전면정비, 집행실적·성과부진사업의 과감한 예산 감축등 추진
  -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업기획 예산 요구하고 공동사업단 운영 등으로 사업집행·평가를 통합 관리

4)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 2. 재원배분 중점

### □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역동성 강화

-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준비된 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스마트상점 등 新유통 인프라 지원
-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유턴, 신북방 신남방 수출시장 생산기지 개척 지원 확대
- 한류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관광쇼핑 체험을 통합 연계하는 '코리아 토탈관광패키지' 도입
- 혁신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추진하고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원
- 대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노후 기반시설 개량, 생활SOC 및 스마트 교통 치안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 □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혁신성장 가속화

-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을 DNA(데이터·5G·AI) 기반 기술과 접목하여 고도화
- 혁신기술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 도약(scale-up)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R&D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
- 공장 산단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농어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팜·양식 클러스터 조기 구축
-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품목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R&D·실증인프라·양산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혁신 기술·산업에 대한 도전적 R&D·모험자본 투자·정부조달을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보강
- ICT 기반의 의료·교육·근로·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

## □ **좁좁한 사회안전망으로 포용가치 확산**

---

-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고, 청년·40대·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등 생계·고용·교육·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장애인,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정,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돌봄·자립 지원을 맞춤형으로 개선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주거·보육·일가정 양립지원 등 체감형 패키지 투자 확대
-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서비스 품질 개선, 노인 일자리 내실화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균등, 공동체, 안전,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삶의 질 제고**

---

- 감염병 전문병원·인력 확충,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 전략적 확보, 백신·치료제 R&D 확대 등 방역·치료 시스템 고도화
- 노후 경유차 감축 등 핵심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 벤처기업 등 녹색산업 육성 추진
-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등 생활 주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풍수해·화재 등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제고
- 핵·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개발·도입, 가상·증강현실 기반 훈련프로그램 확충 등 스마트 군 역량 제고
- 전략지역 대상 공공외교 및 신남방·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ODA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강화
-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협력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등에 중점 지원

## □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강력 추진 및 안전망 강화

- (디지털 뉴딜)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
    - ※ '20년 UN 전자정부평가(7.11.) : 193개국 중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온라인 참여지수 공동 1위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新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경쟁력 강화
- (그린 뉴딜)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탄소 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
  -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親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
- (안전망 강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 →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혁신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작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 □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촉진

- (재정투자) '25년까지 국비 114.1조원 수준을 순차적으로 투입 → 新시장 창출·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 (제도개선)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 지속 →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5)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기획재정부)

## 1. 기본방향

### □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예측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과정의 출발점이자,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운용의 청사진으로, 계획성 중요
  - 수립기준 안내시점을 단축(7월)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예산편성과 연계성 강화

- 주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 반영 여부를 투자심사·지방채 발행의 선행요건\*으로 운영 중
  -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후략)
-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요사업 발굴 시,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편성과 연계성 제고 노력 필요
  - \*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한 면밀한 수입·지출 분석

-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감세 조치로 재정수입 약화 우려되는 반면, 방역·복지 등 지출수요는 증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계획성 높은 수입·지출 관리 필요

## □ '포스트 코로나' 에 대비한 분야별 지출계획 재구조화

-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사회복지 분야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 등 재정 투입 필요 전망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제 활성화 중심 사업계획 필요
- 기존 분야별 지출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여, 지출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근거한 새로운 계획 수립
  - ※ (예) 경제활성화, 보건 분야 지출 확대에 대비 관행적 민간경상보조금 등 구조조정 필요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자원조달 계획성 제고

-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신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
- 회계·기금에 보유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예탁 사용 후 상환하거나, 수입 여건이 양호할 때 재원을 적립하고, 필요 시 전출 사용 가능
- 최근 코로나19 등 지출수요 증가에 대해 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적립된 자원규모를 사전 파악하여 지방채 등 자원조달 계획 수립

## □ 인력운영비 추계 계획성 제고

- '공무원 충원 중장기 자원소요계획'(17년)에 따른 공무원 충원 규모 및 그 간 채용 추이를 고려, '21~'25년 인력운영비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

## □ 국가 재정운용방향과 부합하는 자원배분

- 국가와 지방의 예산편성 방향을 연계하여, 재정투입의 성과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2. 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1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시행)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22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1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관련되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 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의견수렴 실시
  -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과정으로 확대('18.3.) 되었으므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1. 군정목표

## 민선7기 군정목표 · 방침 및 희망영암 7대 공약

##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



## 희망영암 7대 군정공약

- 1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
- 2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3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 선도
- 4 **항공 · 드론 ·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 5 **문화관광 ·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 6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영암** 만들기
- 7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 발전

## 2. 일반현황

(2020년 1월 기준)



### ○ 인구 및 세대

- ▶ 54,623명 / 27,288세대  
(세대당 2명)



### ○ 면적

- ▶ 612.5km<sup>2</sup>  
(농경지 36%, 임야 37%, 기타 27%)



### ○ 행정구역

- ▶ 2읍 9면, 121 법정리, 403 행정리 725반



### ○ 행정조직

- ▶ 1실 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
- ▶ 공무원 수 718명 ※ 군의원수 : 8명



### ○ 산업구조(고용인원기준)

- ▶ 1차산업 30.6%
- ▶ 2차산업 40.5%
- ▶ 3차산업 28.9%

### 3. 재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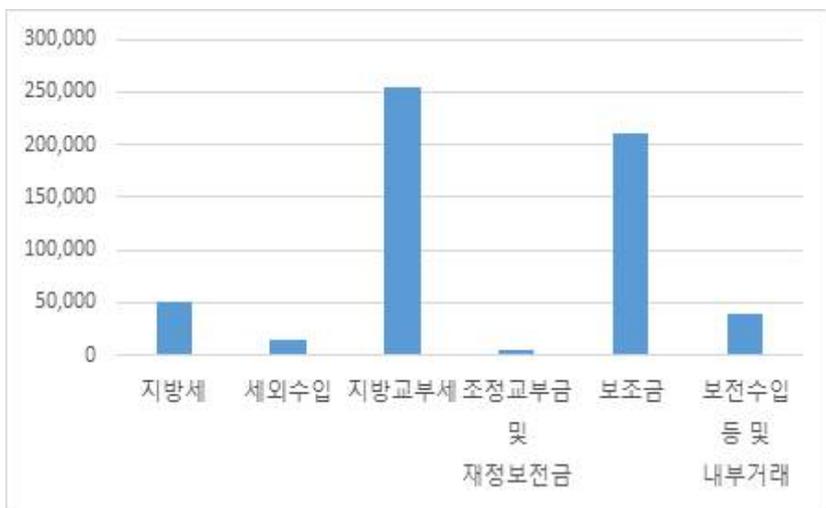
#### ● 예산 규모(2020년 3회추경 기준)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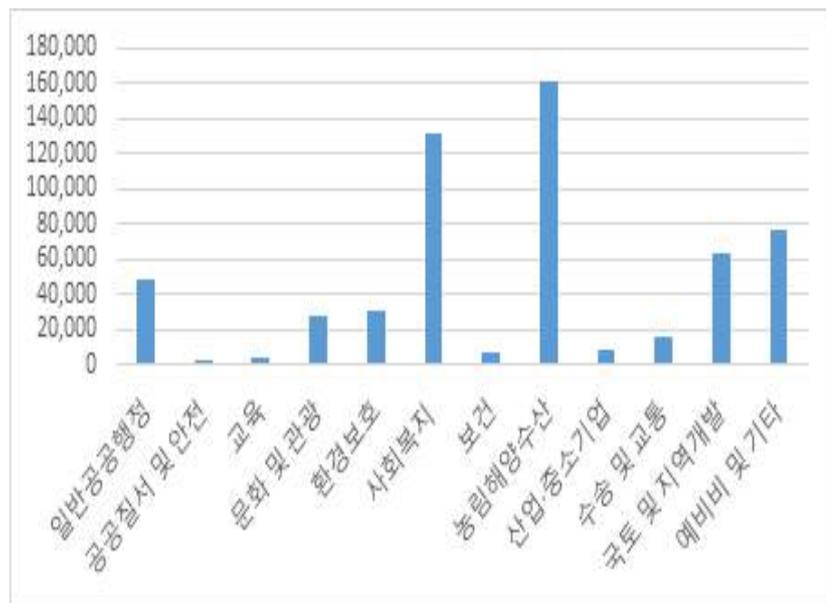
총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637,014	577,161	50,148	9,705

#### ● 세입·세출 현황(일반회계)

세 입	
지방세	50,627
세외수입	14,399
지방교부세	255,30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08
보조금	211,39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926



세 출	
일반공공행정	48,852
공공질서 및 안전	3,085
교육	3,993
문화 및 관광	27,891
환경보호	30,219
사회복지	131,192
보건	7,356
농림해양수산	160,278
산업·중소기업	8,315
수송 및 교통	16,479
국토 및 지역개발	63,018
예비비 및 기타	76,483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11.27%

- 재정자주도 : 56.46%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6,636	100	529,085	100	567,965	100	577,161	100
지방세	42,269	8.51	42,169	7.97	47,538	8.37	50,627	8.78
세외수입	24,738	4.98	25,165	4.76	12,787	2.25	14,399	2.49
지방교부세	207,562	41.79	226,400	42.79	278,446	49.02	255,305	44.23
조정교부금 등	5,659	1.14	5,697	1.08	6,179	1.09	5,508	0.95
보조금	167,922	33.81	181,393	34.28	183,201	32.26	211,396	36.6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485	9.76	48,261	9.12	39,814	7.01	39,926	6.92

▶ 2017 ~ 2019년 : 최종예산 기준 / 2020년 : 제3회 추경예산 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6,636	100	529,085	100	567,965	100	577,161	100
일반공공행정	32,768	6.60	26,339	4.98	28,354	4.99	48,852	8.47
공공질서 및 안전	1,785	0.36	6,095	1.15	14,892	2.62	3,085	0.53
교육	4,203	0.85	4,706	0.89	4,244	0.75	3,993	0.69
문화 및 관광	37,472	7.55	34,582	6.54	36,386	6.41	27,891	4.83
환경보호	68,754	13.84	67,502	12.76	37,078	6.53	30,219	5.24
사회복지	90,289	18.18	104,127	19.68	124,258	21.88	131,192	22.73
보건	6,375	1.28	8,790	1.66	7,901	1.39	7,356	1.27
농림해양수산	117,614	23.68	133,863	25.30	144,615	25.46	160,278	27.77
산업·중소기업	4,051	0.82	5,055	0.96	4,617	0.81	8,315	1.44
수송 및 교통	15,547	3.13	17,139	3.24	21,491	3.78	16,479	2.86
국토 및 지역개발	49,329	9.93	49,264	9.31	64,842	11.42	63,018	10.92
예비비	3,324	0.67	4,294	0.81	6,638	1.17	5,707	0.99
기타	65,125	13.11	67,328	12.72	72,649	12.79	70,775	12.26

▶ 2017 ~ 2019년 : 최종예산 기준 / 2020년 : 제3회 추경예산 기준

## 4. 중기재정운용 목표

###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자원 배분

-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 늘어나는 복지과 재난안전 등 지역개발 수요 부담을 적절히 안배
- 전시행정·일회성 행사나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 □ 계획적인 재정운영 지속 추진

-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중점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사후평가 및 분야별 한도제 도입

### □ 지역발전과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원 배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체육 산업육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전략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 재원을 배분
-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통합기반 강화에 집중

### □ 투자사업 책정 우선순위

-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 우선 편성
-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 마무리에 우선 책정
-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국가의 지역개발 연계사업
- 기타 주민숙원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중기 세입 전망
- 중기 자원배분 전망
- 재정 계획
- 부문별 현황
- 세부 사업계획서